

##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

소관부서 : 일자리정책과

제정 2025 · 12 · 26 조례 제2331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적기업”이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.
2. “예비사회적기업”이란 다음 각목의 기업을 말한다.
  - 가.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
  - 나. 「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업(이하 “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”이라 한다)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이하 “사회적기업 등”이라 한다)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등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시책과 정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사회적기업 등의 지원)**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·법률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
2. 사회적기업 등의 인력양성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

##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

3. 사회적기업 등의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지원 조직의 활성화 사업
  4.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, 청년, 초·중·고등학생의 교육 개발 및 시행
  5.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개발비 지원
  6. 사회적기업 등의 일자리 인건비 지원
  7. 사회적기업의 4대 보험료 지원
  8. 사회적기업 등의 전문인력 지원
  9.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
-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.

**제6조(실무협의회 구성·운영)**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